

의안번호	2219004
의 퇴 인	김종민의원
회 답 일	2026.9.18.
추계번호	26D264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음 ※현행 「지방자치법」은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자치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①~② (생략) 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면에는 리를 둔다.	재량규정
2	안 제14조(재정특례)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액에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가산하여 보정할 수 있음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에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 －세종특별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이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 ※현행법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설치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4조(재정특례)	(미대상) ○ 개정안과 같이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규모 또는 보정 비율을 상향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이 증가할 수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액은 해당 기간 동안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국가 통합재정 측면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상세 사유

□ 행정구 설치 근거 신설(안 제6조)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를 ①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②시, 군, 구로 구분하고, ②에 속하는 시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라 ①에 속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없음
-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구가 설치되는 경우 인력 증원, 청사 신축 등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2026년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는 1읍, 9면, 15동(행정동)이 있음
- 다만, 행정구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추정을 위하여는 개정안에 따라 설치될 행정구의 수, 행정구별 인구 규모, 이에 따른 조직 규모 등이 추정가능하여야 하나, 현재 행정구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하여 소요비용 추정에 한계가 있음

□ 재정 특례 관련(안 제14조)

- 현행법에 따르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의 재원 및 교부는 다음과 같음
 - 보통교부세: 해당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및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재원¹⁾으로 하며,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²⁾
 - 보통교부금: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합산한 금액을 재원³⁾으로 하며,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⁴⁾
- 이와 같이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등의 일정한 비율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보통교부금이 증가하는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액이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국가의 통합재정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1) 지방교부세법 제4조(교부세의 재원) ① 교부세의 재원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해당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2.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총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5.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6.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3호의 차액을 정산한 금액
- ② 교부세의 종류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교부세: (제1항제1호의 금액 + 제1항제4호의 정산액) × 100분의 97
- 2) 지방교부세법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각각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과 합산하여 산정한 후,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생략)
-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 「영유아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 ④ (생략)
-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보통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통교부금을 총액으로 교부한다.
- ② (생략)

- 참고로,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및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보통교부금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추가적으로 지급될 교부액을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보통교부세: 2026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통교부세 금액은 224,850 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기준재정수요액 ¹⁾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부족액 (A-B)	조정률	보통교부세 ²⁾
768,307	596,908	171,399	0.7007782	120,275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보정수요액(34,280백) 포함

2) 당초 예산 기준, 인센티브(100백) 및 보전재원(62백)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 개정안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액 추정

(단위: 백만원)

기준재정수요액 ¹⁾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부족액 (A-B)	조정률	보통교부세
917,534	596,908	320,626	0.7007782	224,850

1) 보정 전 기준재정수요액 734,027백만원과 기준재정수요액의 100분의 25를 합산

주: 보정 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조정률, 인센티브, 보전재원을 2026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보통교부금: 2026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보통교부금 금액은 952,612 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2026년 보통교부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기준재정수요액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부족액 (A-B)	가산액 ¹⁾	보통교부금
968,493	102,482	866,011	51,584	917,595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보정수요액

자료: 교육부

- 개정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교부액 추정

(단위: 백만원)

기준재정수요액 (A)	기준재정수입액 (B)	재정부족액 (A-B)	가산액 ¹⁾	보통교부금
968,493	102,482	866,011	86,601	952,612

1) 개정안에 근거하여 보정 비율 100분의 10 적용

주: 보정 전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을 2026년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